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	가파하고 따라서 같이 상정되었던 14개항의 조례안 관련된 업무의 지장 초래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요지(부결)

- 부천시와, 경기도의 법해석의 차이가 빚어
낸 사항으로서 도의 재의요구가 타당하여
부결기로 함
- 가결시 대법원에 제소되어 같이 상정되었
던 14개항 관련업무 처리 지연의 우려됨
으로 부결이 타당함.

5. 심사결과: 부 결

6. 참고사항: 재의 요구에 따른 기획담당관의 해
명 및 보사국장의 사과가 있었음.

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1. 7. 22.

일반행정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1991. 7.11.

나. 제 안 자: 부천시청

다. 회부일자: 1991. 7.19 회부

라. 상정일자: 제 1차 일반행정특별위원회(1991.
7.20) 상정, 의견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시정 과장 이완기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실정에 맞는 통·반장을 선정 위촉하
여 원활한 대민행정 및 통·반업무 수행
능력 제고하는데 있음.
- 통·반장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 특
수시책 일환으로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
역에는 가급적 여자 통장으로 위촉하여 주
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여성참여를 유도하
는데 있음.
- 통·반장 정년을 제도화하여 신속한 동행
정 수행능력을 도모하는데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통·반장 위촉대상 및 연령개정
- 통·반장 정년제 실시: 통장-65세
반장-60세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· 통·반장 위촉시 여자 운운은 성차별 분위기 가 있으므로 삭제가 어 떨지.	· 도시 주택가에서(특히 아파트지역) 남자통장 지원자가 없고, 여성통 장의 활동이 효율적이 었기 때문에 여성 참여 를 유도하려고.
· 반장과 통장의 역할이 밀접한 관계이어서 이 의 서로 보완적인 선 출은 어떤지.	·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됨.

4. 토론요지

해당없음

5. 수정안 요지

- 반장은 반주민의 동의로 선출, 통장이 위촉
- 통장은 반장이 선출 통장이 위촉
- 통·반장 연임시 위의 절차에 의함.
- 1992. 1. 1.일부터 시행

6. 심사결과

수정안가결

부천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

부천시 통·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중 제2항, 제3항 다음과
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.

②통·반장은 당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25
세이상 58세이하의 주민으로 안보관이 투철하
고,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통장
이 위촉한다.

다만, 반장은 반주민이 선출하고, 통장은 반장
이 선출한다.

③통·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항의
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통·반장정년) ①통·반장의 정년은
다음과 같다.

1. 통장-65세

2. 반장-60세

②통·반장의 정년은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
수 있다.

③통·반장의 정년 연장은 통장이 당해 통·반
장의 신청에 의하여, 건강상태, 직무수행 능력

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부 칙
이 조례는 1992.1.1 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1. 7. 22.
일반행정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1. 7.11.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다. 회부일자 : 1991. 7.19. 회부
라. 상정일자 : 제 1 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
(1991.7.20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정과장 이완기)

가. 제안이유

-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중·고등학교 재학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및 추천권한을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주어 구·동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원활한 대민행정 수행을 하는데 있음.
-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 실시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명감을 고취하는데 있음.
- 내부부 지방기획과에서 '91.6.27 일자로 전국 시·도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었고, 경기도에서도 '91.7.1 일자로 진시·군에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, 본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음.

나. 주요골자

- 통장자녀 장학생추천 및 선발·지급정지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.
- 통장자녀 장학생의 정원을 통장정수의 10 %이내에서 15 %이내로 지급범위를 확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장학생의 정원을 통장정수의 15 %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원으로 할 수는 없는가?	현재 10 %인데 15 %로 늘리고 차후 예산이 허락하면 검토 상정하겠음.

4. 토론요지

해당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, 이유, 골자

해당없음

6. 심사결과
원안가결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1. 7. 22.
일반행정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1. 7.11.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다. 회부일자 : 1991. 7.19. 회부
라. 상정일자 : 제 1 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
(1991.7.20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주남)

가. 제안이유

- 지적법 시행규칙이 '91. 2. 1.일자로 내무령 제 522 호로 개정됨에 따라, 수수료 인상에 따른 "400 원권", "700 원권 2, 수입증지 신설

나. 주요골자

- 증지의 종류중 300 원권 다음에 400 원권, 500 원권 다음에 700 원권 신설.
- 증지의 종류중 400 원권, 700 원권 신설에 따라 별지 제 3,4,5,6 호 서식 변경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액면을 300, 700으로만 해야 하는지 일반원권등 교액권은 불가능한지.	○전국 공통사항임.
○ 300 원을 1,000 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.	○전국 공통사항임.

4. 토론요지

해당없음

5. 수정안 요지·이유 골자
시행일은 92.1.1.일부터
6. 심사결과
수정안 가결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